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8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5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중 금융기관과”를 “시금고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중 금융기관과”를 “시금고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안전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u>시중 금융기관</u>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 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한다.</p> <p>②<u>시중 금융기관</u>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 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에게 용자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u>시금고</u>..... ②<u>시금고</u>.....</p>
<p>제10조(용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u>시중 금융기관</u>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용자대상자 선정) ①.....<u>시금고와</u>.....</p>
<p>제11조(용자조건) ④용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u>시중 금융기관</u>과의 협약에 의한다.</p>	<p>제11조(용자조건) ④.....<u>시금고간</u>.....</p>
<p>제12조(추가용자) <u>시중 금융기관</u>에서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p>	<p>제12조(추가용자) <u>시금고</u>.....</p>